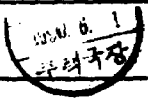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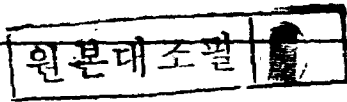


기 안 용 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주계30420-30	(전화: 731-6392)	시행상 특별취급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시 장		
수신처 보존기간				
시행일자	90. 5.			
보조 기관	주택국장 전걸	협조 기관	법무담당관	문서통계
	주택개발국장		개발계획계장	
	개발1계장		개발2계장	
기안책임자	김종천(최종선)			발 송 인
경유 수신 참조	각 안 참 조	발신 명 의	시 장	
제 목	서울특별시 주택개발제개발사업 시행조례(안)입법예고			
제 1 안 내부결재				
1. 우미시 주택개발제개발사업 시행조례준칙(안)및 시행규칙 준칙(안)에				
대하여 서울특별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로자 하오니				
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가. 게재문안 : 공고안 의 불대조필				
나. 게재신문 : 시보및 서울시보				
다. 게재일자 : 90.5. (공고기간: 게재일부터20일간)				
첨부 1. 공고안 1부				
2. 우미시 주택개발제개발사업시행 조례준칙(안)및 시행규칙(안)1부				

제 2 안
수신 공보계획담당관 
제목 공고문 시보및 서울시보게제의뢰
1. 서울특별시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16조 규정에따라 별첨 공고안을 시보 및 서울시보의 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게재문안 : 공고안
나. 게재신문 : 시보및 서울시보
다. 게재일자 : 90.5
첨부 공고안 1부 곁.
제 3 안
수신 법무담당관 
제목 같은건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(90.5. .)와 관련입니다.
2. 서울특별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별첨 공고안과 주택개발경제개발 사업시행 조례준칙(안) 및 시행규칙준칙(안) 을 송부합니다.
첨부 1.공고안 1부
2.주택개발경제개발사업시행조례준칙(안) 및 시행규칙준칙(안) 1부 곁.



90.6.2
90.6.2
152
11/10
152

공 고 안

서울특별시 공고 제 332호

"서울특별시 주택개발재개발 사업시행 조례준칙(안) 및 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"

서울특별시 주택개발재개발사업 시행 조례준칙 및 시행규칙 준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법제 사무처비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0. 6. 2.

서울특별시장

- 1. 자치 법규명 : 서울특별시 주택개발재개발사업시행 조례준칙(안) 및 시행규칙준칙(안)
- 2. 취지 : 지방 자치법 시행에 따라 자치구별 자력개발 방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 재개발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개발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.
- 3. 주요내용 : 별첨
- 4. 의견제출 : 이조례 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0.6.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16절지를 새워서 작성)를 서울특별시장 (참조: 주택개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
원본제기

住宅改良再開發事業施行條例準則(案)

(主 要 內 容)

- 가. 法令에서委任된價格評價額次 (第20條, 第21條)
- 나. 共同利用施設의 設置基準 (第11條)
- 다. 分讓地 使用承諾規程 (第25條)
- 라. 全區域 事業完了前 部分 分讓處分基準 規程 (第29條)
- 마. 應變合議期間 (第14條)
- 바. 分讓地不指定無許可應變物措置 (第15條)
- 사. 國公有地의 繰放補等 (第18條)

施行規則準則(案)

(主 要 內 容)

- 가. 遷地의 分台 (第6條)
- 나. 遷地面積의 算出 (第7條)

원본대조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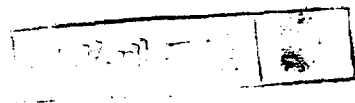


가. 法令에서委任된價格評價節次 (第20條, 第21條)

제20조 (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 평가) 관리처분계획을 평가식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, 종전토지등의 가격과 분양예정지 또는 건축시설의 수산액은 구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격에 의한다.

제21조 (가격평가위원회 운영) ① 제20조 규정에 의한 가격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영제6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증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도시정비국장으로 하고, 토지등의 소유자인 위원은 회의 개최 통보로서 위촉에 가통하고 회의종료로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증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, 담당계장이 된다.
- ⑤ 위원회의 위원증 공무원인 위원 및 토지등의 소유자인 위원이 회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- ⑦ 위원회의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⑧ 위원회의 위원증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

11장

나. 共同利用施設의 設置基準 (第11條)

제11조 (공공시설의 설치기준) 자력개발사업의 공공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 같다. 다만, 구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1. 도로폭은 택지면적의 15% 이상 확보하고, 노폭6m 이상 도로의 구배는 20%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.
2. 상하수도는 서울특별시 배·급수 및 하수도시설기준에 맞도록 설치한다.

다. 分區地 使用承諾規程 (第25條)

⑤ 분양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가 주택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잔금납부이전 그 사용을 승락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청인은 매각대금을 소정기일내 2분지 1 이상 납부한자에 한한다.

라. 全區域 事業完了前 部分 分區處分基準 規程 (第29條)

제29조 (분양처분) ① 분양처분은 시행구역에 대한 공공시설공사 및 관리처분계정인 주택개량이 완료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구역의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 부분 분양처분 할 수 있다.

1. 공공시설공사 및 주택개량이 완료된 지역
 2. 공공시설공사가 완료되고 주택개량이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관리처분계정인 바에 따라 확정측량 및 토지의 분할절차가 가능한 지역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 분양처분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권리관계를 하여 구획별로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일본대조필

3. 1
수장

마. 建築合辦期間 (第14條)

제14조 (건축합의기간)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본양지를 지정받은 경우의 건축
합의기간은 시행기간 만료일 1년전까지로 한다.

바. 分屬地不指定無許可建築物措置 (第15條)

제15조 (본양지 부지정 무허가건축물 조치) ① 택지안의 보상금지급조례 대상
건축물로서 본양지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, 본양지를 의망하지 아니한 주거용
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제13 조 제3항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될 소유자는 조치결정후 대책부여전까지 소유자
책임하에 당해건축물의 철거와 세입자이주를 끝내야 한다.

사. 國公有地の 緣故續等 (第18條)

제18조 (국공유지의 연고권등) ① 구역안의 국공유 토지 점유건축물중 공공시설
설치용지에 저속되지 아니한 건축물소유자에게는 그 점유에 따른 연고권을
인정할 수 있으며, 이를 본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조례 적용대상
건축물 이어야 한다.

원본대조필

가. 遺地의 分合 (第6條)

제6조(환지의 본합) 토지이용계획용 환지계획상 필요할 때에는 종전토지 1필지를 수개의 획지로 환지할 수 있으며, 동일 소유자의 종전토지 수필지를 합하여 1개의 획지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.

나. 遺地面積의 算出 (第7條)

제7조(환지면적의 산출) ① 조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.

$$\text{환지면적} = ((\text{종전토지면적} + \text{가산면적}) - (\text{공용부담면적} + \text{연도부담면적})) \pm (\text{장수 또는 교부면적})$$

② 제1항의 가산면적은 공도에 접한 종전토지면적의 1합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된 면적으로 한다.

1. 종전토지가 공도에 접한면의 길이에 전면 공도 평균폭(지적도서에 의한 도로의 폭을 말한다)의 1/2을 곱한 면적

